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6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16일

3. 제안이유

-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이나 타시도 인사를 적극 발굴 수여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 협조를 유도코자 함.

4.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수여대상이 충청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 되어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선정원칙과 기준을 정함(조례안 제2조)

나. 대상자는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되, 필요시 유관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3조)

다. 대상자 결정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심의후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 긍지감을 갖도록 지역문화행사, 간담회등 각종 도정관련 행사시 초청 하는 등 대우기준을 마련함(조례안 제4조제6조)

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원할때는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7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간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그 수여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과 결정 등에 있어서 현행 조례의 흡결로 인하여 증서수여의 타당성과 수상자들의 사후적 대우등의 결여로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등을 갖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명실상부한 충북의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하고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참여와 협조를 유도코자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 대상자추천, 대상자결정, 대우등에

관한 조례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비하여 보완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개정조례안